

# 한국 전통마을 保全방법론에 관한 연구

— 현행 保全과정의 특성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姜 東 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Methodology for Traditional Villages in Korea

— Focused on Characters and Problems of Applied Conservation Process —

Kang, Dong-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policies and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raditional villages in Korea.

To pursu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ed conservation process to traditional villages. Specifically, it attempts to search for new approaches. Mainly, the using cases are the designated villages protected by law.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First part is devoted to the understanding of applied conservation process.

This work is execu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five stages. (① preliminary investigation, ② designation, ③ main investigation, ④ planning and design, ⑤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part, the second part is analyzed problems of past and current situation and arranged formulation of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This is composed of this items. (① law and institution, ② methods of conservation, ③ investigation and analysis, ④ management)

This study doesn't suggest substantial alternatives, but the analyzed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ther work of conservation for traditional villages in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지난 60년대 외국에서 역사환경 保全에 대한 개념이 점적인 형태에서 면적인 형태로 확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면적인 형태의 보호대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의 한옥보존지구와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서의 전통마을들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1991년 5월 가회동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었고, 전주의 한옥보존지구도 해제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경주 한옥보존지구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통마을도 근근이 ‘血緣’과 地緣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젠 일반농촌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전통마을로서의 모습이 서서히 퇴락이 되고 있고, 기존의 문제들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더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에서 이러한 현실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面的인 형태의 역사환경 保全(conservation of historic environment)에는 큰 고비가 되는 시점인 것은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주민대책 부재, 다양한 보전방법론 연구부재, 관심부족 등이 그동안 이 분야발전에 큰 문제들로 지적되어 왔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면적인 역사환경들에 취해진 그동안의 정책들을 고려해보면, 개선된 국가정책을 무작정 기다릴 수 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기위한 선행연구로서, 우리의 현실을 검토하고, 현재의

여전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보다는 현재 전통마을관련 정책 및 관리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먼저 찾아보려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구체적인 保全<sup>1)</sup> 방법론을 찾기 위한 검증과정으로서, 현재의 “전통마을 보전과정”의 고찰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현재 역사환경보전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조사→지정→관리에 이르는 과정의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점들은 전체 과정속에서 살펴보아야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항목별로 정리할 특성 및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라기보다는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춘 새로운 ‘보전방법론 정립’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 2 연구대상의 정의 및 관련내용

#### 1) 전통마을의 정의

기존 여러분야에서의 마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이 마을관련 용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다음의 용어 체계속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즉, 전통마을은 취락, 촌락, 동족부락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곳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표상이 어린 곳으로서 그 곳 특유의 전통문화를 간직하며 후손들이 옛인들의 향기와 얼을 느낄 수 있는 마을<sup>2)</sup>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의 ‘전통마을’이란 용어는

1) 최근, 이상해(1993)는 「保全」개념을 ‘역사환경을 간직한 땅, 터, 환경을 현재에도 상하지 않게하여, 나아가 생명을 잃지 않게 보두어야 한다는 뜻과 통한다. 그 속에는 그 땅, 그 환경, 그 유산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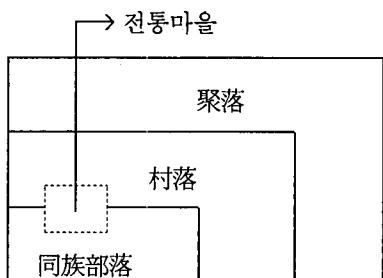
2) 이상해(1993) ‘역사문화환경의 생태학’,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서울·발언, p.285.

2) 김근호(1987)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오랫동안 시대변화의 동요됨이 없이 마을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지역집단을 말하며, 혈연부락과 자연부락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 전통마을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상은 법적보호대상인 6개마을<sup>3)</sup>로서, 이는 전통마을이라는 의미가 법적용어로 이해되어 나타나는 현상<sup>4)</sup>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적보호대

상마을들에 대해 통칭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전통마을'은 기존 정의 및 유형에 포함되는 모든 마을들을 통칭하나, 연구내용상 주로 6개의 법적보호대상 마을이 해당된다.



(그림 1) 관련용어 체계

<표 1> 마을관련 연구방향 및 내용

분류	지리학	인류·사회학	민속학	건축학	조경학
주연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입지를 중심으로 지역·마을 공간구성 파악</li> <li>•민가 유형분류를 통한 지역성 고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주민과 관련 혈연·경제·신분구조 등에 대한 관계성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물리적인 마을관습·신앙·의례 등을 중심으로 재발굴 및 해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공간구성 및 분파과정</li> <li>•민가평면유형화</li> <li>•단일 주제속에서 시대적 단면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공간구성의 해석</li> <li>•마을경관해석</li> <li>•마을의 단위 대상들의 분석</li> <li>•재발굴·해석</li> </ul>
주연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지리학: 산촌, 어촌, 농촌</li> <li>•역사문화지리학: 민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단위에서의 가족 및 마을주민</li> <li>•지역공동체적 의미에서의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전체</li> <li>•단위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전체</li> <li>•단위대상: 정원, 정자목, 원림, 민간신앙, 길 등</li> </ul>
연구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지리학: 지적도 및 지도를 활용한 분석 및 이론도출.</li> <li>•문화역사지리학: 민가문화과정 및 유형도면 /이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data 및 해석중심 이론</li> <li>•설문/면담을 통한 결과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그림 중심의 설명 및 면담결과를 토대로한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및 설명도가 부가된 이론</li> <li>•평면(1/50, 1/100) 중심의 해석/분류 및 해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및 설명도가 부가된 이론</li> <li>•단위대상에 대한 상세연구물을 토대로 분석</li> </ul>

3) 6개마을은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승주 낙안읍성, 아산 의암리마을, 고성 왕곡마을 등을 말한다.

4) 유사한 의미로서 6개 법적보호대상마을들은 현주민 및 주변사람들에 의해 '민속마을'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는 '법적보호=관광화'라는 인식때문이고, 용인민속촌의 영향때문인 듯하다.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지리, 인류, 사회, 민속학 등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건축학 및 조경학은 前者와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마을에 관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전통마을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건축학<sup>5)</sup>, 조경학<sup>6)</sup>의 경우 전통마을을 단순히 역사환경으로서의 형상파악에만 주력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전통마을에 대한 연구들의 주안점은 '농촌으로서의 역사환경'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미래에 대한 관점'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농촌'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며 정체된 공간이 아닌 '변화에 대응하는 역사환경'으로서의 접

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 3) 전통마을 관련법규 및 제도

역사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학문적 발전과 함께 실제에 있어 이를 규제하고 강제하는 법률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연관된 역사환경은 그 내용이 주어진 현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현재의 법체제에서는 여러가지 한계가 나타난다.

현재 마을단위에서 전통마을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지정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 등 2가지이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통마을관련법규 요약

	문화재보호법(전통마을관련부분)	전통 건조물 보존법
보존방법	사적, 중요민속자료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재정의도	전통마을 원형 훼손방지	지정문화재 이외의 전통건조물·지구 보존
특성	원형보존측면 : 적극적방법 환경질 측면 : 소극적방법	보존대상 기준완화 : 최소한의 규제로 내부 형상변경 가능 보존계획 수립가능
보존대상	전통마을, 읍성 등	전통건조물(50년이상), 전통건조물군
적용사례	낙안읍성(사적) 하회·성읍·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	왕곡·외암리마을(전통건조물 보존지구)

5) 건축학에서의 전통마을에 관련된 연구들은 해방이후 지속되어 온 民家에 대한 연구와 住居史에 대한 연구들 외에 전통마을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는 이정근(1972)의 「한국자연부락의 공간구조」이며, 특히 동족부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논문은 김기호(1979)의 「동족부락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전통마을에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住居史적인 접근방법과 住居學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는데, 住居史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한 연구들 중 주거형태연구는 강영환, 전봉희, 조성기, 최일 등의 연구가, 마을형태에 관한 연구는 장성준, 이정근의 연구가, 주거/마을 형태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들은 박명덕, 강선중의 연구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주거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김순일과 홍형옥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6) 조경학에서 전통마을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마을경관과 마을 공간구성, 전통주택의 정원 및 조경요소(민간신앙, 풍수지리.)에 관련된 것이며, 마을 공간구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건축학의 연구결과들과 거의 유사하다.

80년대 들어 김한배(1981), 이재근(1981)의 연구를 시작으로 간간히 석사논문을 통해 명맥을 이어오다, 최근 80년대 후반부터 여려관점의 연구들이 되고 있고, 90년대에 들어 마을단위의 총체적인 접근과 정원/담/길/원림 등의 조경요소를 위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경관과 공간구성을 조사/분석/해석하는 연구가 일반화 되어 있지만, 유사한 주제를 가지는 단위공간(사찰/궁궐/서원/별서 등)연구에 비해 연구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 전통마을내 단위시설 및 자료에 대해서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및 시 도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한 문제점검토가 아닌 보전방법론 구축을 위한 가능성과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행해지던 단발적인 사례분석과는 다른 방법을 분석과정에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마을 보전의 문제점들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을 같은 위상에서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대한 연구들도 단발적으로 각 부분의 분석에 치우쳐, 체계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계(system)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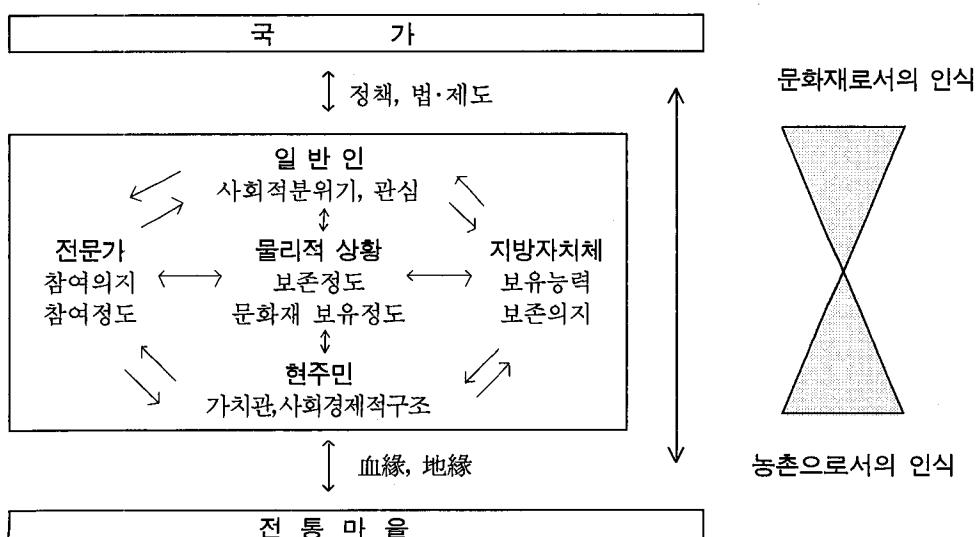
해 하나의 시각속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하나의 마을, 특히 전통마을에서는 복합적인 상관요인 및 요소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인 및 요소들 중 '전통과 개발'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 즉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로서 특히, 과거의 전통마을들은 家門간, 계층간의 문제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 보다 사람들에 의한 '전통보존과 개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현재까지 전통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했던再生産의 기본 틀이었던 '相續'과 '分家'의 기능의 약화 소멸됨과 동시에 이러한 기능들이 마을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 마을유지기능의 변용현상.

둘째,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경외심속에서 유지되어 오던 전통마을의 '전통'과 '생활'이라는 기본관계에 국가가 '규제 형태'로 개입하여 발생하는 갈등 등이다.



(그림 2) 전통마을 보전의 기본체계

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evelopment'의 개념보다는 주민생활 환경개선 측면의 'improvement'에 근접한 의미이다.

이러한 근본원인들은 몇가지의 보전관련요인들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다음과 같이 전통마을 보전의 기본체계를 이루고 있다.

위의 보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중 어느 한가지라도 결여가 되면 올바른 보전이 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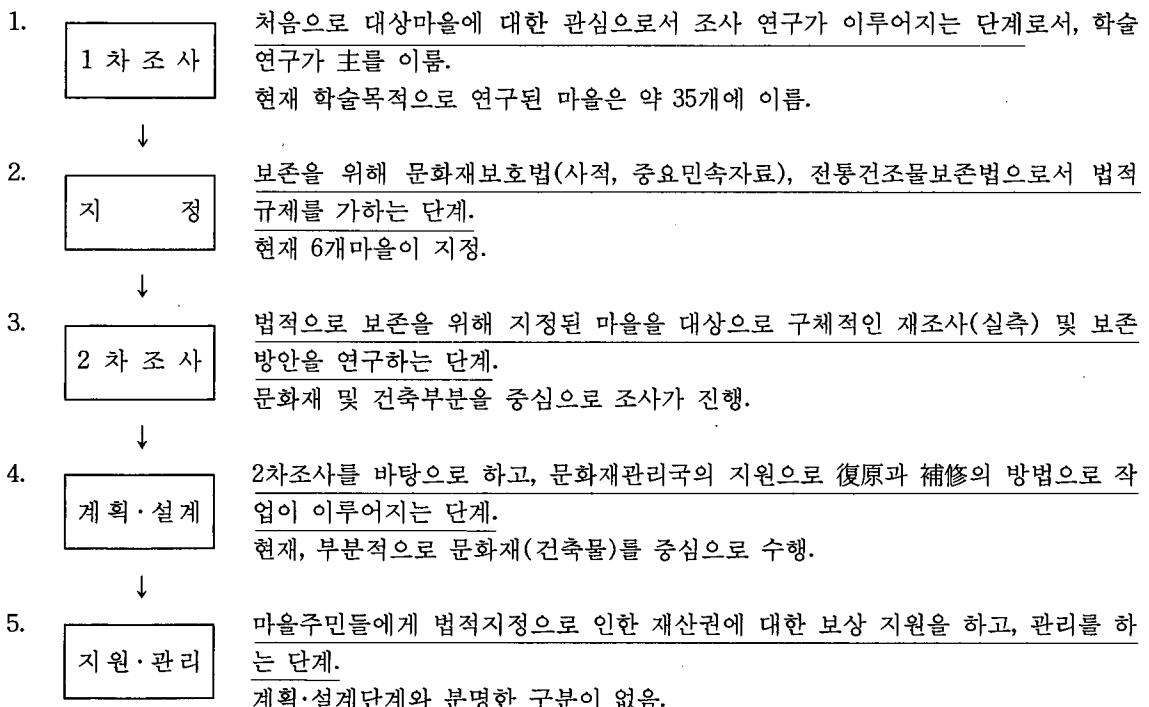
그러므로 보전방법론 정립을 위해서 가장 선 행되어야 할 일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라 하나의 체계(System)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각 요인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를 일관된 시각속에서 설명·분석을 하는 것이다.

## 2) 분석방법

위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보전체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마을의 指定前부터 관리단계에 이르는 보전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의 선택이유는 보전체계내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시각속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를위해, 일본의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의 지구지정과정<sup>8)</sup>과 영국의 '보전지역'(conservation area) 지정과정 및 최근 Larkham(1993)에 의해 제안된 보전지역 지정과정<sup>9)</sup>을 사례로 하고, 현 법상의 우리나라 전통마을 지정과정을 참고로 다음 5단계의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현행 보전 과정을 설정하였다. 보전과정상의 각단계는 명확한 구분이 되기보다는 어느정도의 중첩이 되며,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보전과정과 기본내용

8) 宮澤智士(1987)「町ならびみ保存のネットワーク」, 東京: 第一法規, p.268. 참고 .

9) Larkham, P.J. & A.N.Jones(1993) "The character of Conservation areas in Great Britain", *Town Planning Review*, 64(4), p.408. 참고

각 단계별로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 마을에 대해 전체과정이 체계적으로 일괄적용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틀(① 기본사항, ② 관련사례, ③ 소결)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보전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 및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보전과정 속에서 분석되는 특성과 문제점들은 유형화과정을 거쳐 각 항목(① 관련법 제도 자체, ② 조사 분석방법, ③ 보전방법, ④ 관리방법)에 따라 외국사례 및 개선방향 등과 함께 정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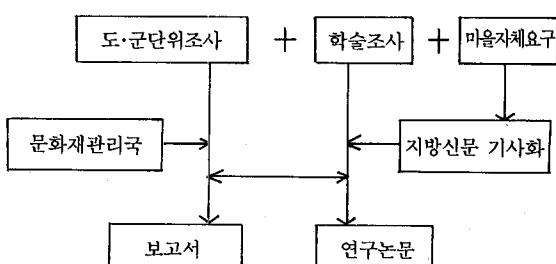
## II. 전통마을 保全과정 고찰

### 1. 1차조사단계

#### 1) 기본사항

##### ① 조사경위

일반적으로 1차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위는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4) 1차조사의 기본과정

10) 연구대상으로 기본조사 및 연구가 된 35개마을은 다음과 같다.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영풍 무섬마을, 안동 의인마을, 영덕 호지마을, 달성 료동마을, 성주 한개마을, 산청 남사마을, 봉화 닭실마을, 봉화 해저마을, 봉화 오록마을, 안동 내앞마을, 안동 도산마을, 영일 덕동마을, 상주 갈가실마을, 금릉 원터마을, 상주 우천마을, 이천 내하마을, 이천 소일마을, 이천 웃돌안마을, 용인 문사랑마을, 안성 덕미마을, 양주 긴재마을, 화순 월곡마을, 대전 상사마을, 아산 외암리마을, 고성 왕곡마을, 대구 웅골마을, 김제 연동마을, 나주 도래마을, 제주 오조마을, 제주 봉성마을, 제주 하예마을, 제주 성읍마을, 승주 낙안읍성

11) 법적용어는 아니며, 전통적인 향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마을로서 사업적인 목적과 함께 마을주민의 많은 부분의 생활이 관광과 연계된 마을이다.

그러나 '경주 양동마을'에서 주민면담을 해 본 결과, '양동마을=민속마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12) 유사한 예로서 본인이 참여했던(1992.10월~1993.2월) 전북 정주시의 「흑암지구 농촌정주권 개발계획」에서 흑암마을 내 4개마을 중 하나였던 '신흥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개발방향을 기준의 마을돌담 및 각종 향토적 자원을 활용한 민속관광마을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행한 적이 있다.

#### • 도 군단위에서의 조사

문화재관리국과 연계되어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을 전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마을내 문화재(건축물) 단위를 초점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형식으로 출간된다.

#### • 학술조사

대부분 1차조사는 이에 해당되고, 주로 '건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民家)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현재 본 연구자의 조사로는 현재 약 35개 마을<sup>10)</sup>이 실측 연구 또는 비교연구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한국건축사 및 문화재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결과물의 형식은 연구논문, 실측보고서 또는 단행본(성주 한개마을(1991))의 형식이 대부분이다.

#### • 마을 자체요구

침체된 마을의 회생을 위해 대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민속마을<sup>11)</sup>'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례는 없으나, 농촌回生의 방법으로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② 조사내용

주로 마을역사, 광역적 자연환경(풍수지리적 시각), 기본적 인문환경, 마을 공간구성, 마을경관, 宗家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실측, 宗家변화 등이 해당된다. 기존 향토지, 고지도 등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현장답사와 宗孫 및 마을유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80년대 이전에는 사회·인류학분야에서 1차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80년대 이후는 거의 건축분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는 사회·인류학분야의 일반농촌생활

변화에 대한 관심변화 및 건축분야에서 民家연구의 영역확대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2) 관련사례

위에서 분류한 3가지의 패턴들중 일반적인 경우인 군단위조사<sup>13)</sup>와 학술연구<sup>14)</sup>외에 '마을자체의 요구'가 있고 이러한 내용중 지방지(포항신문 92.3.5)에 기사화가 된 '공자마을' 사례와 마을자체요구가 관찰되어 중앙지(한국일보 94.2.28)에 기사화된 홍부마을 사례를 소개한다.

### ① 공자마을

- 경북 경주군 안강읍 청영리 소재.
- 조선개국을 반대한 고려 72현중 하나인 孔隱의 후손들로서 曲阜孔씨의 유일한 집성촌으로서 현재 약 60여가구가 거주.
- 孔子의 영정을 모신 「사상재」(1916)와 중국 산동성의 曲阜를 다녀온 3년간의 여행기인 「中華往還錄」이 보관.
- 매년 추향제를 올리고 있고, 曲阜孔씨의 동족결합의 구심점의 역할.

### ② 홍부마을

- 전북 남원군 동면 성산, 아영면 성리 등 2곳에 소재.
- 소설과 판소리로 전해오던 홍부전의 발상지로 입증된 후(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의뢰) 홍부마을을 재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
- 기존 마을별로 추진해 온 홍부제사를 확대하고 남원군민의 날(10월 15일) 행사명칭을 '홍부제'로 바꾸고 일시도 홍부가 박을 타 부자가 된 다음날인 음력 9월 9일로 변경.
- 기존 춘향제와 함께, 옛 홍부마을 정취의 복원, 각종 행사를 유치 등을 할 계획 중.

## 3) 소 결

학술적인 관심(실측자료화, 공간구성원리 규명)과 보존에 대한 문제의식(지역정체성확보를 통한 홍보효과)을 가지고 접근하는 단계이다.

앞으로는 학술관점의 일반적인 패턴(공간구성원리...) 차원보다는 실측자료화와 농촌문제에 연결된 연구와 특히, 郡단위에서 본격화될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지역홍보차원의 조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차연구는 기존 조사된 곳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물리적인 변형요인(농촌개발, 댐공사, 도로 개설, 공단입지...)으로 인한 파괴 소멸이 예상되는 마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실측자료화 작업.

② 각 지역차원에서 마을자체의 요구가 있는 마을들에 대한 연구와 미래의 마을보전 방향에 관한 연구.

## 2 指定 단계

### 1) 기본사항

80년대에는 '보존관련법'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기대로 宗家를 중심으로 양반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였다. 현재에는 1차조사가 이루어진 마을들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보호를 위해, 郡단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확보(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정신청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민합의과정에서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반후손들은 일반적으로 건물보수 및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증·개축 등 생활환경 개선문제때문에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주로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조사가 많으며 냅수물지역의 마을조사(임하댐, 안동댐)가 주를 이룬다.

14) 학술적인 연구로서 가장 선구적인 연구들로는 '안동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한 김택규(1964)의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가 있고, 70년대는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한 최재석(1972)의 「한국농촌사회연구」가 있다.

80년대 들어, 건축계에서 民家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개인단위(김홍식) 및 연구단체(서울대 무에건축연구실, 울산공대 건축과, 연세대 건축과)에서 실측위주의 조사결과들을 정리 연구하고 있다. 조경계에서는 '안동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한 우정상(1976)의 석사논문이 최초이며 그후 대부분 법적지정된 6개마을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2) 관련사례

지난 1992년에 전통마을지정과정에서 주민합의의 실패로 마찰을 빚었던 경북 영일군 기북면 오덕리 “덕동마을”的 사례를 소개한다.

- 1992.5.20~27일까지 33가구 8,964평을 대상으로 향토사학가 및 문화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지표조사 및 유적세부조사 보호구역설정 정비 및 복원사업의 순으로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형문화재 243호인 용계정 및 민속자료 80호인 애운동을 비롯한 5점의 문화재와 전통가옥 14호, 900여권의 고서가 보관되어 있다. 또한 300~400년된 노거수들이 마을 곳곳에 어우러져 있다.

• 그러나 3~4명의 古家소유주만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가옥 증·개축의 불가능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와 친인척간 불신과 분열발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3) 소 결

현재의 법 제도에서는 보존을 위한 ‘전통마을 지정’보다는 ‘민속마을화’가 더 용이(관광수입과 직결)하고,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마을을 보존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의 제정으로 전통마을지정이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회 양동마을같이 大宗家를 중심으로 한 이미 지정된 마을들은 양반후손들의 자궁심과 지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했기 때문이었으나, 현재, 지정을 반대하는 마을들은 과거의 법적지정이 가능케했던 그러한 이유보다 생활대책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며, 또한 지정된 先例들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하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물리적 손실보다는 정책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반대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로서 서울의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에 대한 1979(지정전)~1992년(해제후)까지의 ‘地價변화’를 검토해 본 결과, 보존지구지정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동산 가치의 보다는 부동산거래의 어려움이라든지, 주택수리의 곤란, 수리비의 과다, 주차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 미흡과 같은 다른 생활상의 요인이 많다고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신홍개발지에서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인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또한 보존지구의 ‘지정시기’가 地價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존지구 ‘지정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地價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보존지구지정이 재산권손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후 적절한 보상과 지원대책만 따라 준다면 앞으로 보존지구지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sup>15)</sup>

특히 地價에 민감하지 않은 전통마을의 경우, 보존지구지정후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생활개선 및 생산기반에 대한 융통성의 부여 여부가 앞으로 전통마을지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통마을 지정확대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 3. 2차조사 단계

### 1) 기본사항

#### ① 조사경위

법에서 보존대상으로 지정이 된 마을에 대해 실시되는 단계이며, 문화재관리국의 지원과 해당 ‘道’와 ‘郡’의 주관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 ② 조사내용

기본적으로 전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되나, 물리적인 측면 특히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외형 및 평면의 실측이 주내용이나, 최근에는

15) 이민우, 강동진, 안동만(1993)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8권 4호 (70호), pp.183~196. 참고

16) 일본의 경우,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34곳(도시계획구역외 12곳, 도시계획구역내 22곳)이 지정되어 있다.(92년 5월 현재)

Master Plan을 중심으로 주거보존방안에서부터 관리운영계획까지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석·박사논문연구들은 이 보고서들에 의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한 자료축적이 되지 않아 건축외의 분야연구들은 내용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보호대상 마을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들은 아래와 같다.〈표 3〉참고

현재 발간된 보고서들의 1차조사와 2차조사는 시기적으로 지정단계의 전 후라는 것외에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즉, 2차조사의 내용이 현황파악과 관광을 위한 마을환경 개선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별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없다.

〈표 3〉 법적보호대상마을의 보고서

대상	1차조사	2차조사
낙안읍성	낙안성 민속마을 조사연구 보고서(1979)	낙안성 민속마을 세부현황 종합보고서(1985)
하회마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1979)	안동 하회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1989)
성읍마을	성읍 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1980)	
양동마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1979)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 조사보고서(1994)
왕곡마을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1989)
외암리마을		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1989)

## 2) 관련사례

1989년에 실시된 '외암마을'의 2차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참조

외암마을에 대한 2차조사결과들은 기존 결과물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관광객과 古家

〈표 4〉 '외암마을'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기본내용

기본내용	특징 및 한계
1. 현황분석 마을현황, 마을배치 민가현황, 기존민가분석	·일반적인 2차조사결과에 진일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환경계획, 관리/운영계획) ·기존 연구들과 달리 '조경'부분이 독립되어 다루어졌다.
2. 보존방안 보존방향설정, 마스터플랜 주택보존방안, 기반시설 및 환경계획, 공동시설,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	·기본개념이 '관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주민'과 '관광객'의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3. 종합의견	

자료 : 아산군(1990)『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소유주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외암마을 학술조사 연구보고서'의 기본 패턴을 수용하여 최근 수립된 양동마을에 대한 2차조사 결과<sup>17)</sup>도 마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깊은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민가에 대한 실측과 이에 대안수립에 치중하고 있어 마을전체와 거주민의 실생활 보호차원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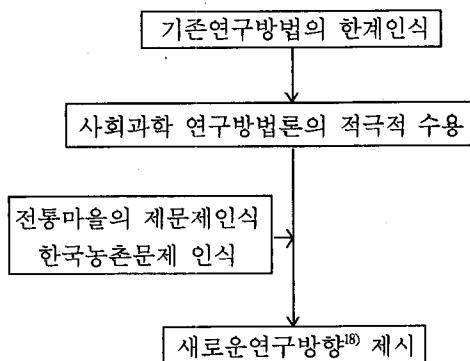
### 3) 소 결

주민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시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 ① 사회과학연구 결과들의 배제

전통마을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유사 관련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연구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최근 자연과학에서 이를 수용하여 응용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연구된 연구들은 몇몇의 선각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진 결과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연구되어 왔다.

자연과학의 연구들도, 특히 건축학의 연구들은 民家의 유형분류와 마을공간구성에 관련된 연구들에 치중되어 왔고, 실측에 의한 현재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패턴이었다. 조경학에서도 뚜렷한 관점이나 방법론이 없이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림 5) 새로운 연구방향

17) 경주군(1994)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

18) '새로운 연구방향'이란 전통마을을 단순한 문화재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환경 즉, 농촌의 생활공간 및 생산 공간이라는 측면이 부가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분야의 마을에 관련된 논문들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답습이 아닌,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통마을의 제문제들과 한국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연구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기본사항에서 밝힌 내용처럼 「학술보고서」들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통사회 즉, 전통마을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계획안 자체에 한계가 있고, 기존의 문제있는 방법론을 그대로 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② 民家위주의 조사대상의 편중성

'전통마을'='농촌'이라는 관점하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사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조사, 마을주민에 대한 인류학적조사, 농촌자원 조사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사참여자의 구성(문화재위원+건축관련 전문가)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80년대 이후 건축학자가 주된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결과가 내용적으로 편중되게 되었다.

#### ③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부족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을 위해 지정전 약 1~3년동안의 학술조사기간을 거치는 일본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보전관련 부분의 수행 능력자체보다는 짧은 연구기간, 부족한 재원 등이 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4. 계획 및 설계 단계

#### 1) 기본사항

원칙적으로 계획 설계단계와 관리단계가 구분이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단계가 거

의 통합되어 나타난다. 즉 마을에 대한 계획 설계작업이 보상의 형태로 변용되고 있고 이 계획 설계단계에서의 작업자체가 '관리단계'로 여겨질 정도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대부분 2차조사의 내용들을 반영한 마을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보다는 문화재(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기념물)를 위주로復原 및補修를 위한 부분설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 관련사례

(표 5) 1992년 법적보호대상 전통마을 사업내용

마 을 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낙안읍성	성곽보수 해자정비 객사보수·주변정비 화장실건립 안내판설치 민간보수	성곽보수 121.5m 해자정비 167.9m 객사보수(50평), 삼문복원(20평) 및 주변정비 1동 36m <sup>2</sup> A형 안내판 1개소 민가3동보수	
안동하회마을	퇴락가옥 및 고건물 보수	류성하: 안채/대문채 류시연: 대문채 류재영: 안채 류홍준: 안채	최복선: 문간채 류시영: 문간배 보수 권춘화: 안채 초가이영잇기: 83동
경주양동마을	터락가옥 및 고건물 보수	이경산: 안채 손사용: 아래채 이두원: 아래채 초가이영잇기: 32동	이원철: 아래채 수졸당: 담장 120m 두곡영달: 채실
성읍민속마을	민가정비	퇴락/변형가옥 9동 보수 —송창근: 밖거리 —조인준: 밖거리 —윤진선: 밖거리 —조창의: 목거리 부지매입: 79평 주차장, 상가지역내 기반시설 및 조경 초가 이영잇기: 452동 띠밭 6,720평 매입	—아방형: 안거리 —이창순: 밖거리, 창고 —조정근: 창고
고성왕곡마을	퇴락가옥보수	전윤덕: 안채 함병식: 안채	함대균: 안채 함우엽: 안채
아산외암리마을	퇴락가옥 및 변형가옥 보수	이대선: 안채/부속채 이문선: 안채/부속채 이풍세: 안채/부속채 운순철: 안채/부속채	신동주: 화장실 조봉한: 화장실 안영석: 화장실 초가잇기: 32동

자료: 문화재관리국(1993) 「문화재관리년보」 6호에서 발췌 정리.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실행한 1992년 사업을 통해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경주 양동마을의 사례와 또한 양동마을의 2차조사단계로서 추진되고 있는 '양동마을정비계획'을 살펴본다.

- ① 1992년 법적보호대상 전통마을 사업내용  
<표 5>참고

사업내용을 건물관련부분, 주차 및 편의시설부분, 마을부분 등으로 유형화는 가능하나, 거의 90% 이상이 건물관련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제8조 '보호구역지정'의 기본목표인 마을분위기형성을 위한 접근방향을 개체단위의 시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연계부분(마을외부공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는 별무리가 없어 보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화에 대한 투자증가와 주민의 변동이 앞으로 심화될수록, 이러한 접근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한다.

② 최근 5년간 양동마을 사업내용 <표 6>참고

양동마을도 건축물復原 및 補修외에 마을전체를 위한 사업은 없고, 1993년에 마을하수로를 정비 및 설치하였다. 그러나 하수로 정비결과는 원래의 의도인 엄격한 고증을 통한 원형복원과는 먼 일반농촌에서 볼 수 있는 하수로와 다름없으며, 마을구조변형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최근 5년간 양동마을 사업내용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1988	고건물 및 퇴락건물 보수·복원	이향정 가옥 사랑채/곳간채 정충각 및 노비각 손병의가옥 안채/사랑채/곳간채 이원국가옥 안채(3칸) 이양길가옥 안채/문간채
	불량건물 철거	이석곤가옥 철거
1989	고건물 및 퇴락가옥 보수	손원락가옥 : 안채/사랑채/곳간채 남풍원가옥 : 안채/사랑채 설천정사 장만귀가옥 : 헛간채 두곡영당
1990	고건물 및 퇴락가옥 보수	이형동가옥 : 사랑채/문간채/ 무첨당 : 안채/사랑채 낙선당 : 아래채 이원용가옥 : 사랑채/부엌채
1991	고건물 및 퇴락가옥 보수	손동만가옥 : 담장 87m 일각문(신축) 양생당 : 관리사 영귀정 : 관리사 이원용가옥 : 사랑채/부엌채
1992	고건물 및 퇴락가옥 보수	경산서원 : 안채 보수 손사용가옥 : 안채, 아래채 이두원가옥 : 안채, 아래채 이원철가옥 : 안채, 아래채

③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중 계획

• 설계부분의 내용

그동안 매년 투입된 약 2억원정도의 예산으로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판단아래 주민불편해소 및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340억의 사업비로 5년동안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구상되었다.

사업내용들은 민가정비, 기반시설 및 환경계획, 전시시설 및 편익시설 건립, 대형주차공간 및 문화재탐방로 개설, 각종 휴게시설 및 소공원조성 등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그중 민가정비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 민가정비부분에서 각호의 구체적인 정비방법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산출한 정비대상 민가(총121호, 각호마다 1~3동씩 보유)중 약 80%가 현재 건축면적인 5평~30평에서 약 1평~15평씩 축소계획되

어 있고, 80% 이상이 초가로 복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9)</sup> 이는 원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겠지만, 주민들의 실제 의견과 실생활을 무시한 물리적 외형보존위주의 계획·설계의 결과인 것이다.<sup>20)</sup>

### 3) 소 결

전통마을을 포함한 역사환경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흔히 등장하는 원형파괴에 대한 주장은 '전통'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택해서 조합되어지는 것이다. 즉, 변화에 재적용 할 수 있도록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마을의 경우, 단위건물의 원형보다는 오히려 마을단위에서의 원형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동마을의 경우에 오히려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배수공사, 종가앞 길 넓히기 등)은 가장 중시해야 할 마을의 기본 구조와 패턴을 변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 ① 미래마을의 변화상황에 대한 연구 부재

사람의 생활이 함께 병행되는 공간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단기적인 결과물을 우선시하는 현실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 ② 계획 및 설계방법론의 부재

마을단위의 접근이 결여되어, 일반화된 민속마을화(박물관, 식당, 화장실, 주차장, 탐방로, 광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 설계 대상은 민가보수, 담장보수, 초가이엉잇기, 문화재복원 등에 제한되어 있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민가복원·보수를 위한 설계방법론도 古家는 골기와로 民家는 초가를 원칙으로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계획 및 설계가의 비다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런 이유로 주민의 삶과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바탕을 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시공업자 관리체계 부재

전문적인 시공업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하기 때문에 시공기술의 전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 5. 관리 단계

#### 1) 기본사항

크게 '주민관리'와 '마을관리' 등 2가지의 관리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주민관리'는 지원과 보상차원에서 '마을관리'는 문화재관리방법인 '행위금지'와 '동결보존'이라는 원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분류한 2가지의 관리방법도 '문화재관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다.

#### ① 주민관리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원차원：古家(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보상차원：古家 및 民家의 보수

#### ② 마을관리

현재 '전통마을' 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항은 없고, 문화재관련법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3부분에 적용을 받고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장 罰則'에 15개 항  
→ 금지조항 및 벌금에 대한 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장 제2절 관리보호'의 22개 항 → 문화재수리를 위한 지침
- '전통건조물보존법 제7조-15조'의 내용  
→ 보존계획수립 및 관람료 등

위의 3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금지조항과 벌금, 단위문화재관리를 위한 방법만을 나열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들은 '문화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법조항들의 적용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명목상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들은 거의 단기적인 '보상' 차원으로 변용되고 있고, 특별히 마을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되지

19) 구체적 예로 이○○씨가옥의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황 : 안채/사랑채/곳간채-5132평 ·계획안 : 3218평 ·비고 : 19.14평 축소

20) 경주군(1994)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 pp.121-130 참고.

못하고 있다.

## 2) 관련사례

### ① 6개 전통마을 5년간 지원액 <표 7>참고

낙안읍성 및 성읍마을의 사업비가 타 마을에 비해 5배이상 많은데, 이는 2개 마을이 관광목적의 민속마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타 마을들도 지금까지의 마을 원형을 지탱해 왔던 노력들이 쇠퇴하면서 점차 '관광민속마을'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② 양동마을 사례

<표 6>의 사업내용과 <표 7>의 지원액이 사실상 양동마을에 대한 관리의 전체내용이다.

이처럼 마을의 형태보존을 위해 단위 시설들에 관리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점차 새로운 내부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주민들의 생활조건 및 의식 차이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7> 6개마을 5년간 지원액

	84~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합 계
낙 안 읍 성	3,378,051 2,352,508	1,249,321 874,585	929,814 650,870	1,020,871 714,610	815,000 570,000	714,285 500,000	8,107,342 5,662,573
안동 하회마을	529,000 250,000	277,450 179,450	258,735 179,450	271,040 188,000	273,440 191,408	185,142 129,599	1,794,807 1,117,799
경주 양동마을	303,000 144,000	283,450 179,450	258,735 179,450	271,770 188,500	274,714 192,300	220,571 154,400	1,612,280 1,038,100
성 읍 민 속 마 을	677,000 466,000	543,345 376,845	559,428 388,000	559,428 388,000	785,824 550,077	1,000,000 700,000	4,125,025 2,867,922
고 성 왕 곡 마 을				88,650 43,650	140,000 70,000	224,000 112,000	452,650 225,650
아 산 외 암 리 마 을				100,000 50,000	205,400 102,700	641,000 320,500	946,400 473,200
합 계	4,8887,051 3,212,508	2,353,566 1,610,330	2,006,712 1,397,770	2,311,759 1,572,760	2,494,378 1,676,485	2,579,598 1,713,799	16,728,526 11,312,595
고성 '왕곡마을'과 아산 '외암리마을'은 1989년에 지정							

上액수:총액, 下액수:國費, 단위:천원

자료: 문화재관리국(1988-93) 「문화재관리년보」 1-6호에서 발췌 정리.

대표적인 예로서 축사 및 농기계보관창고 등 생산관련 시설확보문제와 경관훼손상의 이유로 인한 교회 이전문제 등이며, 이는 정부의 새로운 접근의 관리방법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 3) 소 결

관리상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통마을에 대한 기본의식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즉 '관광에 목적을 둔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의식속에서는 현재의 '보상'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재원부족이라는 중요한 원인이 있지만, 이 보다는 다음 2가지의 더 높은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 ① 기본정책의 변화

'문화재관리'에서 '마을관리', '주민관리' 차원으로의 기본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는 궁

극적으로 전통마을이 점차 관광민속마을로 전락하는 현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마을과 관광이라는 개념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본래 전통마을의 보전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민속마을화의 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에는 단순한 관계(주민과 관광객사이)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미 일부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광중개자의 개입과, 주민내부에서의 분리(관광사업종사자와 비종사자)현상 등의 다차원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다양한 지원 및 보상방법 강구

먼저,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생각이 ‘보상’ 차원의 단순접근(주거개수 복원)에서 ‘지원’ 개념의 관리체계(생산기반체계 병행)로 변해야 한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의 현재의 불만, 즉 생산과 생활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의 離農 및 還農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II. 전통마을 保全과정상의 특성 및 문제점

### 1. 전통마을관련 법·제도 자체 측면

#### 1) 기본방향과 부적절한 적용대상의 문제

현재 「문화재관리편람」에서 문화재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면, ① 문화재 원형보존, ② 문화재보존 사업의 신중, ③ 무모한 발굴의 금지, ④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문화재보존 등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재측면의 관리기본방향이 전통마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 명기한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라는 기본목표는 연대를 한정한 과거의 대상만을 취하고 있다.

또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전통마을들은 「문화

재보호법」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화재 보호목적의 구역이지, 이것 자체가 역사환경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더라도, 각 대상의 상황과 성격이 다를뿐 아니라 보호기준이 엄격하고, 특히, 거주민 생활과 관련된 대상들은 단순히 「문화재보호법」의 文化財保存의 개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와달리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군 보존”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보존대상이 건축물에만 치우쳐있어 역사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문화재보호법」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건축물이 외의 공간은 더욱 훼손되어 버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삶’이 개입된 문화재 즉 역사환경에는 새로운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재와 역사환경에 대한 개념 재정의 및 제도상의 재분류작업이 요구되어진다.

#### 2) 관련 法體系의 문제

현재 마을에 관련한 법제는 2가지의 법체계 속에서 3가지의 방법<sup>21)</sup>으로 구성되어 적용되고 있다. 유사한 전통마을인데도 불구하고 3가지 유형의 다른 근거를 가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 않고서도 문제점들이 산재하여 있음은 뻔한 이치이다.

문화재 측면에서 각 마을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민생활이 있는 역사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해볼때 단순한 「문화재 보존」 보다는 「역사환경의 保全」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이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각 마을마다 기본적인 방향은 같지만 마을구성의 현상이 다르고 내재해 있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체계로는 완

21) 2가지 법체계: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3가지 수 단: 사적(낙안읍성), 중요민속자료(하회/양동/성읍마을), 전통건조물보존지구(왕곡/외암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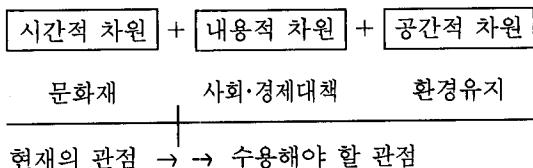
전하게 마을을 유지할 수가 없다. 즉 다양한 대상과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인 역사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 하나의 법체계<sup>22)</sup>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법적보호대상의 보존지구(전통마을)들은 문화재보호법내에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라는 하나의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3) 관련 法내용의 문제

현재 전통마을 관련법들은 문화재관리를 위한 '허기'조항과 '금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련된 부분은 '금지'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조항들이 현재의 여러 문제점의 근원을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조정 및 재인식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적 차원만이 고려되고 있는 현재의 법내용이 아래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6) 법내용의 확대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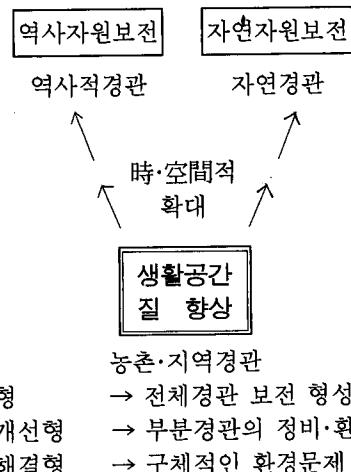
즉 전통마을은 단순한 시간적 차원의 관점에서 농촌이라는 내용 및 공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지역차원에서의 '조례'를 통해 각 지역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 22) 歷史環境保全法(가칭)의 제정

- 문화재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과는 성격이 다르며, 도시/촌락 등 면으로 형성되고 주민생활이 영위되는 모든 환경에 적용되며, 다른 유사 관련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역사환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용하고, 우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 역사환경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일원화된 법체계속에서 각 역사환경의 유형별, 성격별, 상황별로 재분류한 후, 이 분류패턴에 따라 보전에 포함되는 개념인 보존/보호/복원/보수/재활/자율/기록 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역사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구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며, 기타 유사관련법의 중복부분은 「역사환경보전법」이 반드시 우위에 있어야 한다.

23) 農村開發企劃委員會(1993) 「農村地域活性化綜合計劃調查報告書—農村景觀に 條例 協定關する事例の検討—」 p.14.

일본도 사실 우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나, 최근 농촌의 역사자원보전을 위해 이를 농촌경관의 문제영역에 접속하여, 농촌지역경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3)</sup>



(그림 7) 일본의 농촌경관에 관한 문제영역

위 그림처럼 일본은 농촌활성화방안으로 '생활 공간 질 향상'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고유의 농촌경관외에 역사경관보전과 자연경관보전을 통한 접근을 하고 있다.

역사자원보전부분에서 관련된 조례는 '文化條例'와 '傳統的建造物群保存條例'이다. 물론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명기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 각 지·정·촌 조례를 말하며, 대상지역도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을 포함한다.

즉, 일본의 전통마을보전은 농촌문제와 연계된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역사자원보전이라는 단

일목적이 아닌, 타 부분과의 조화를 통해 농촌경관보전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2 조사·분석 방법 측면

###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 ① 조사방법

조사기간의 경우, 독일의 마을보전방법인 'Dorfenerneuerung programm' 수립시에는 4계절조사는 필수이고, 위에서 소개한 일본의 경우에는 각 지구마다 다르지만 약 1~3년 동안 예비조사 및 각 부분조사(건축물/지리/풍속/경관 등)를 번갈아 실시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조사원들외에 자문 및 요구사항을 전하는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훨씬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 ② 분석방법

우리의 경우 현황조사를 토대로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마을 및 주민들의 미래변화예측을 통한 융통성있는 대책마련이 불가능하고, 한시적인 자료로만이 활용되어질 뿐이다.

### 2) 조사내용

현재 공식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지원과 도 군

차원에서 추진되는 1차, 2차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몇가지 결여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결여내용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마을역사, 문화재급건물 관련 사항은 충실히 다루고 있으나, 마을 및 주민측면에서의 마을의 생태적조건, 농촌자원, 주민의식 등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 ② 일본의 경우 〈표 8〉참고

일본의 예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일본의 예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되기 전의 '1차조사결과'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집락경관에 대한 고려와 농촌으로서의 인식이다.

또한 마을변화과정을 고려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우리의 조사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 3. 보전방법 측면

### 1) 기본 정책의 문제

각 국가의 주어진 상황이 달라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무리는 있지만, 일본과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조건속에서 '역사환경보전'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전통마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고,<sup>24)</sup> 독일은 '지역 보전' 차원에서 농촌

〈표 8〉 日本「美山かやふき山村集落 保存對策 調査報告書」의 내용

목 차	주 요 내 용	특 징
역사적 환경 지리적배경 및 대상집락현황	지리적개관, 농촌집락의 특질, 대상집락의 경관구성가 특질	
건조물 집락과 경관	전통건조물, 조사지구 민가의 변화, 민가만들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마을측면에서의 경관고려</li> <li>· 농촌으로서의 이해</li> <li>· 변화과정고려를 통한 보전대책</li> </ul>
집락경관보전의 과제, 주민의식, 지역진흥과의 연계	집락경관의 변화, 집락경관구성, 경관구성요소로서의 외관	

자료 : 美山町·美山町 교육위원회(1990) 「美山かやふき山村集落 保存對策 調査報告書」

24) 일본은 중앙의 존도는 높지만 중앙과 지방이 균형적인 업무분담을 하고 있고, 시정촌단위까지 역사환경에 대한 교육홍보 자문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 재정지원은 국가지원이 주이며, 보존과 함께 철저한 관광개발을 병행한다.

성공적 정책의 여러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 경우와 달리 주민의식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있은 후, 마지막단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정주지(Rural Settlement)의 보전을 위해 독특한 방법론(일명 Dorferneuerung)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일본式 기본정책	= 원형보존+주민생활보호+관광
독일式 기본정책	= 원형복원+환경개선+생산기반구축

(그림 8) 일본과 독일의 마을보전 정책 원칙

두나라의 상황과 전통마을에 대한 기본조건이 다르지만, 정책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주민생활보호차원에서 관광을 권장하고 있고, 독일은 주민참여의 차원에서 생산기반구축을 마을보전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래로 부터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을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며, 이를 계기로 시정촌, 중앙정부까지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주된 특징이다. 즉 주민생활향상, 경관과 문화재 보전 및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수단들과 연계된 종합적인 농촌환경 개선수단으로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 지역내의 교통망개선, 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시설의 개선 등이 주요관점이 된다. 우리의 경우는 ‘문화재보존’이라는 정책목표아래 수단으로 ‘관광’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외국의 경우와는 뚜렷한 기본정책상의 차이가 나고있다.

## 2) 주민참여의 부재

현재 대부분의 결정은 ‘문화재위원회’들이 전담하고 있고, 즉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전통마을정책 결정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공람 등의 형식의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참여정책은 인적자원 활용, 공공과 관계증진, 주민자체의 자긍심부여 등으로 인해 마을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활용이 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우리 현실상 주민(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 3섹타 형태로 새로운 주민 참여의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주민’과 ‘지역전문가’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는 각 지역의 ‘향토사학회’의 개편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외국사례로는 영국의 ‘Civic Trust’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협의회’와 ‘마을가로보존연맹’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경우에는 각 도시에 조직 운영되고 있는 ‘향우회’ 또는 ‘종친회’를 제3섹타 형식의 준민간단체로 전환하고 마을보전을 위한

25) ‘Dorferneuerung’은 마을(Dorf)을 새롭게 한다(Neuerung)란 뜻이다.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최하위 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경지정리와 마을정비사업이다.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촌 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경지의 재편성
- 마을생태계의 보전과 환경보전
- 건물/토지정리정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문화유적의 복원 및 관리
-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요구사항의 최대 수용
- 독특한 농촌문화환경 보전 등이다.

즉, 주민생활향상과 역사환경 및 단위문화재 보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방안들과 연계된 종합적인 농촌 환경개선 방법이다.

Magel, H. and Attenberger, J.(1990), *Das Bayerische Dorferneuerungsprogramm in Kommunalpolitischer Leitfaden 9*, Hanns-Seidel-Stiftung eV. 참고.

26) Hautamaki, L.(1993) “Finnish find renewal in Village Action”, *Town and Country Planning*, 62(10), pp. 283-285, 참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관심·재정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 경제적 대책 부재

주민들에게는 문화재를 위한 자부심을 가지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은 사회·인류·경제학적 인 접근이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한 대책의 출발은 우리 고유문화를 문화재적, 민속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려는 접근의 수정이어야 하며, 또한 마을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마을의 미래존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로 부터 지속되어온 마을유지의 틀과 수단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이러한 것이 변용되어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유지수단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규명도 보전방법론 정립의 큰 부분을 이룰 것이다.

### 4) 계획·설계 방법상의 문제

일본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는 각 시정촌의 조례로서 ① 보존방침 및 기본계획, ② 전통적건조물의 결정, ③ 건조물 보존 정비계획, ④ 보존지구의 환경정비계획, ⑤ 사업에 관계되는 조성조치 등 구체적인 5개항목을 두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철저하게 외관보존을 위해 내부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7)</sup>

즉, 사람, 생활양식, 경관 등의 변화양상에 따라 마을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것이다. 단, 문화재에 관해서는 철저한 보존이 따르게 된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의 계획 설계방법상의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 계획단계의 부재                  • 설계대상의 한계
- 설계방법의 단순
- 계획 설계기관의 부족과 비전문

이같은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체계 및 내용과도 직접 연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법규는 「전통건조물보존법」 7조의 「전통건조물보존지구에 대한 보존계획수립」이 유일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보다는 단순한 현상변경의 제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4. 관리방법 측면

#### 1) 문화재관리국의 한계

지금의 문화재관리국의 임무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조사연구, 5대능원의 관리 등이다. 즉 역사환경의 보전 또는 재창조를 위한 기능 또는 임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출발하지만 전통건조물군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국가기구의 문화청과 각 지방의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이며, 각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 교육위원회내에 여러 유형의 부서를 자율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인 妻籠宿(つまご)에 설치되어 있는 「妻籠宿보존대책실」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를 초월한 조직으로 각종 마을내의 문제와 행정을 다루고 있다.<sup>28)</sup>

물론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지방자치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와 직접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하게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적인 보전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와, 80년대 중반이후 중앙정부차원의 단순연구기관에서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정책을 위한 각종정보전달 및 지원기관으로 변모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문화재관리국(Rijksdienst voor de Monumentenzorg, 일명 RVM)의 경우<sup>29)</sup>를 보아서도 문화재관리에 치우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국의 역할과는 차이가 난다.

27) 官澤智士(1993) “일본 역사환경보전 현황과 과제”,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서울:발언, p.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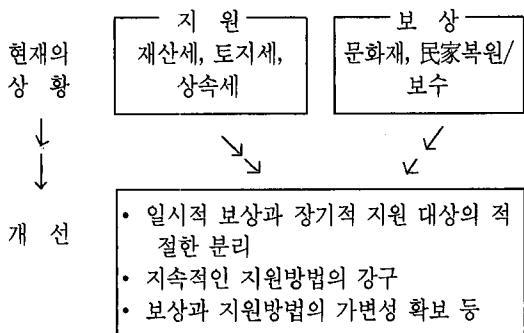
28) Goto, J. and R. A. Arnold(1987)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 Rural Japan”, *Landscape Journal* 6(1), p.47.

官澤智士(1993) 앞의 책, pp.326—327. 참고.

## 2) 전통마을에 적용되는 '지원'과 '보상'에 대한 개념 전환

현재 일반적인 지원(subsidy)과 보상(compensation)의 개념이 전통마을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상으로는 문화재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및 상속세에 대한 혜택 및 문화재 복원/보수를, 주민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원'의 형식으로 해주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재산세 비율이 낮아 거의 혜택이 없는 형편이다.



(그림 9) '지원'과 '보상'의 개념 변화

그러나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성'과 '상황변화에 따른 가변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러한 요건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수 및 복원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보상'의 형태로 변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상'이란 문화재 및 토지소유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일반주민들에게는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마을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까지는 '조상과 혈연'이 마을유지의 근원이 되었지만, 앞으로 세대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보상'과 '지원'의 방법 및 대상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관리대상의 편향성

마을차원으로 관리대상의 확대는 전통마을보전에 대한 기본 개념전환에서 비롯되고, 조사 및 분석단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에서 출발을 한다.

원래 전통마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마을의 각 구성요소들의 전체적 조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건축물위주의 관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점을 드러낼 것임에 분명하다. 즉, 마을전체(마을경관, 마을기본구조 등), 마을부분(민가군, 생산지, 마을입구, 마을수계 등), 마을요소(가옥, 수목(노거수), 길, 원림 등) 등의 측면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 보전에 관계되는 요인으로 국가정책 및 법 제도, 마을주민의 가치관 및 경제구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의지,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 마을의 물리적 상황 등을 설정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보전체계로 정리를 하였다. 또한 이 보전체계에서 전통마을 보전상의 특성 및 문제점들을 본 연구자가 설정한 '전통마을 보전과정'을 통해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통마을관련 법 제도 자체, 조사 및 분석방법, 보전방법, 관리방법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한국=전통적 역사 국가'라는 상식에 비해 국내의 역사환경 유지·관리 방법론이 너무나 화석화된 문화재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안제시를 위한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보전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새로운 전통마을 보전방법론 정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단순한 국가정책위주 및 '전통마을=문화재'라는 기준 접근방법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전통마을들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위의 국가 기본정책에서부터 실제 관리단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재조정되어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地價의 하락 정체문제, 주거의 신개축에 따른 규제와 경제적 보상문제 등이 역사환경보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도시와 달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血緣과 地緣'으로서 형성된 전통마을의 터전인 농촌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한편 관광요구의 다양화, 지방자치의 활성화, UR, 농지법개정 등의 변화는 시대적 배경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전통마을 보전방법 정립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전통마을 보전방법론 정립을 위해서는 보전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의 검토 제시와 함께, 예를 들어 '법적보호 대상마을과 비보호 대상마을', '한국 전통마을과 외국 전통마을' 등을 사례로 하는 비교연구와 비물리적인 보전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 引用文獻

1. 김광억(1984) "전통생활양식의 정치적측면", 「전통적 생활양식연구 (下)」, 정신문화연구원.
2. 김홍식 외(1993)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서울:발언.
3. 문화재관리국(1988-93) 「문화재관리년보」, 제1호-6호.
4. \_\_\_\_\_ (1984) 「문화재관리국실무편람」.
5. \_\_\_\_\_ (1992) 「문화재수리보고서: 경북편」.
6. 박서호(1993) 「사회와 공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박현숙(1991) "제주도 민속마을의 관광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1호.
8. 이남식(1987) "촌락사회의 전통성과 새 환경에의 적응", 「안동문화」, 7집.
9. 이민우, 강동진, 안동만(1993)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계획학회지」, 28권 4호(70호).
10. 최재석(1987) "이촌과 문중조직의 변화", 「한국사회 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서울:문학과 지성사.
11. 탁수성(1993) 「문화재지정 전통가옥을 위한 주거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6)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조사연구설계」.
13. 황기원(1982) "Historic Conservation in the Environmental Design Context", 「환경논총」, 10권. 이외, 각종논문 및 보고서, 신문자료를 참고하였음.
14. 宮澤智士(1987) 「町ならびみ保存のネットワーク」, 東京: 第一法規.
15. 農村開發企劃委員會(1993) 「農村地域活性化綜合計劃 調查報告書—農村景觀に 條例 協定關する事例의 檢討—」.
16. 美山町, 美山町 教育委員會(1990) 「美山かやふき山村集落 保存對策 調査報告書」.
17. Bardhan, P. et al(1989) *Conservations Between Economists and Anthropologists Methodological Issues in Measuring Economic Change in Rural India*, New York: Oxford Univ Press.
18. Browne, W. P. and D. F. Hadwiger(1982) *Rural Policy Problems: Changing Dimensions*, Toronto: Lexington Books.
19. Cantell, D. V.(1977) "Why Conserve?", *The Planner*, 60 (1).
20. Carlson, A. W.(1978) "Designating historical rural areas", *Landscape*, 22.
21. Cloke, P. J. and C. C. Park(1985) *Rural Resource Management*, London:CROOM HELM.
22. Eric, H.(1986) *The Invention of Tradition*, London & New York:Cambridge Univ Press.
23. Gale, D. E.(1991) "The Impacts of Historic District Designation:Planning and Policy Implication", *APA Journal*, 57(3).
24. Goto, J. and R. A. Arnold(1987)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 Rural Japan", *Landscape Journal*, 6(1).
25. Green, R.(1990) "Sustainable development of built environment", *Town & Country Planning*, 59(5).
26. Frederic, O. S. et al(1991) *Rur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Sustainable Communities*, Island Press.
27. Foster, G. M.(1965) *Traditional Cultures: and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change*, New York: Haper & Row.
28. Harper, S.(1989) "Social stratification of rural settlements", *Town & Country Planning*, 58(9).
29. Hautamaki, L.(1993) "Finnish find renewal in Village Action", *Town & Country Planning*, 62(10).
30. Jackson, J. B.(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

- scape, Yale Univ Press.
31. Larkham, P. J. & A. N. Jones(1993) "The character of Conservation areas in Great Britain", *Town Planning Review*, 64(4).
  32. Magel, H. and J. Attenberger(1990) *Das Bayerische Dorferneuerungsprogramm in Kommunalpolitischer Leifaden 9*, Hanns-Seidel-Stiftung eV.
  3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0) *Partnerships for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34. Haskell, T.(1993) *Caring for our Built Heritage—conservation in practice*—, London:E & FN SPON.
  35. Skea, R.(1988) "Recent Aspects of Dutch Urban Conservation", *The Planner*, 74(6).
  36. Shacklock, V.(1993) "Conservation in Local Authorities", *The Planner*, 79(4).
  37. Till, K.(1993) "Neotraditional towns and urban villages: the cultural production of geography of otherness", *Environmental planning D*, v.11.